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 년 2 월 27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인)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전화번호 : 723-5052 (휴대전화: 010-9395-0958 이지은 간사)

소 개 의 원 : 정동영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성명 :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	
건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개년월일	2012. 2. 27	
소개의견 국내 주식 양도에 관한 소득세 부과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90년대 초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대주주에 한해서만 납세의무를 지우고 일반투자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변칙거래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을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이러한 비과세 정책은 금융거래의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나, 오늘날처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가 이미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했고, 세계적으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명분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되 소액투자자에게는 소득 공제 혜택을 주며, 양도차손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통해 주식 시장 활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세형평성 및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소 개 의 원

정 동 영

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 . .

발 의 자 : . . (인)

제안이유

주권상장법인 주식 및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현행법은 대주주에게만 납세의무를 지우고 일반투자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법인이 주식거래를 하면서 조세회피를 위하여 임·직원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하는 등 변칙거래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을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남.

이에 주식거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되 소액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주식시장의 활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세형평성 및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일반화함으로써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세하고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안 제94조제1항제3호).
- 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가액은 매년 계산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 최근 3년간 양도차손이 발생한 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년도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함(안 제95조제1항).
- 다. 주식등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연 3000만원으로 함(안 제103조 제1항).
- 라. 주식등과 파생상품에 대한 세율은 종합소득양도세율과 동일하게 하고, 다만 대주주(중소기업대주주포함)가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104조 제1항 제11호).
- 마. 주식등에 대하여는 6개월 뒤 시행하되,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2년의 경과 규정을 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4조의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매년 계산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최근 3년간 양도차손이 발생한 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년도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손도 공제한다.

제103조항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연 3000만원.

제104조의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나. 그 외 주식등과 파생상품

제55조제1항에 의한 세율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포한 날로부터 2년 이후에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 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 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u>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u> <u>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u> <u>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u> <u>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u> <u>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u> <u>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u> <u>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u> <u>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u> <u>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u> <u>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u> <u>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u> <u>(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u> <u>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u> <u>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u> <u>(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u> <u>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u> <u>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u> <u>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u>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u>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신주</u> <u>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u> <u>식등”이라 한다) 또는 「자본</u> <u>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u> <u>률」 제5조에 해당하는 파생</u> <u>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u> <u>소득</u>

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
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
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
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
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
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생략)

② (생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
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
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
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
서 신설>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95條(讓渡所得金額) ①-----

-----.

다만, 제94조의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매년 계산된 양도차익의 합계
액에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

를 공제한 뒤 최근 3년간 양도
차손이 발생한 년도가 있는 경
우에는 납세년도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손도 공제한다.

第103條(讓渡所得基本控除) ①讓

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
여는 다음 각호의 所得별로 당
해연도의 讓渡所得金額에서 각
각 年 250萬원을 공제한다.

1. 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
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
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

② · ③ (생 략)

第104條(讓渡所得稅의 稅率)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
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第103條(讓渡所得基本控除) ①--

--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
-----.

2. -----3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연 3000만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104條(讓渡所得稅의 稅率) ①-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1. ~ 10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나. 그 외 주식등과 파생상품 제55조제1항에 의한 세율
--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정현백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정 동 영		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